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66
----------	------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31일 이은주 의원 발의 (찬성 11명)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은주 의원)

### 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치료등을 위한 동물병원 이용하는 횟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양상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을 명시함.

##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을 명시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시에 필요한 장비 등의 설치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제정안의 제안 배경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가구가 전체 가구의 20%에 이르고 있음.<sup>1)</sup> 그러나 유기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음.<sup>2)</sup>
-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비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sup>3)</sup>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3년간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관련해서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고지 순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4)</sup> 이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하여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기인한다고 보임.

1) 서울특별시.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산다’...반려견이 85%로 대부분」. 보도자료. 2019.11.05.

2) 김창호(2019).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1577). 국회입법조사처.

3)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4) 한국소비자연맹,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1위 진료비과다청구, 동물병원 11%만 사전 가격게시」, 보도자료. 2021.01.07.

- 연도별 진료비 관련 주요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18년 대비 '19년에 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물병원 125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곳(11.2%)만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진료비의 표준화와 진료비 표시제 운영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1.2.22부터 ' 21.3.11까지 진료비 표시 등의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sup>5)</sup>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해 2024년까지 동물병원 진료체계 표준화를 추진예정에 있음.

〈국회 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	주요내용	발의일
허은아 의원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항목 표준 고지	'20.08.19
강민국 의원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항목 표준 고지	'20.08.19
전재수 의원	동물 진료항목 표준고지	'20.09.14
박덕흠 의원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항목 표준 고지	'20.09.18
김병욱 의원	동물의료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한 동물진료행위 표준화 연구 조사	'21.01.19
정점식 의원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및 진료항목 표준고지	'21.02.08
서일준 의원	동물 진료행위에 관한 설명 및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진료비용등의 고지	'21.02.24
안병길 의원	동물 진료행위에 관한 동의, 진료비 게시	'21.02.2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1-5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관계 단체 및 부서 의견 <sup>6)</sup>
대한수의사회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임대료, 인건비, 보유 의료장비나 수의사 각자의 진료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어야 하고, 공공재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민간 분야인 동물 진료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표준화된 진료비가 낮게 설정될 경우 낮은 진료비 수준에 따라 진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고, 반대로 진료비가 높게 설정될 경우 일률적 진료비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으로서, 2021년부터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

- 이에 동 조례 제정안은 동물병원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게시하는 내용의 ‘진료비 표시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장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시민이 안심하고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제정안의 주요내용

### (1) 총칙 (안 제1조~제3조)

- 제정안 제1조는 진료비용 표시제를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에 이바지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병원”, “반려동물”,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

6)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안 제4조)

- 제정안 제4조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진료비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의 내용으로 「수의사법」<sup>7)</sup>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의견

-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 질병명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자유형식의 텍스트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병원 별로 진료비 결정방식이 상이하고 각 병원별 자체적으로 설정된 코드체계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료행위항목별 비교 및 통계작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sup>8)</sup>
-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사전고지 부재), 진료비를 게시(공시)하는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에 대한 갈등,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임.<sup>9)</sup>

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1-5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입법예고

8) 농림축산식품부(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9) 김창호(2019).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1577). 국회입법조사처.

- 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물병원의 자율적 가격표시 제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은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6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3월 31일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1명)  
찬 성 자 : 성중기, 송도호, 송아량,  
오한아, 우형찬, 이광호,  
이승미, 이영실,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치료등을 위한 동물병원 이용하는 횟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양상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을 명시함.

###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시에 필요한 장비 등의 설치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없음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33000000020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은주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3.30

회신일 : 2021.03.30

내용문의 : 02-2180-7942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라 진료비 계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9,9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9,900천원으로 연평균 5,9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시 관내 동물병원은 2021년 3월 현재(877개)에서 이후에도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참여기관이 매해 새로 추가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시행 1차년도에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의 수가 597개소(’21.3월 기준)임을 감안할 경우 절반수준인 299개소의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 ※ 참여기관의 수는 추정이 어려우나,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경기 동물병원 50개소를 조사한 결과 (2019) 18%가 진료비용 게시증임을 감안하여 가정하였고, 추후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 반려동물 진료비 계시에 필요한 표시장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현 조례안에서는 종류와 소재 등이 제시되지 않아 지원단가를 정하기 어려워, 개소당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2020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용 자율표시제 시범실시중인 경남 창원외의 설치비용부터 기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개별 동물병원의 사례, 나라장터 내 검색가능한 표지판 가격, 각종 인증 현판 제작비용 등을 참고하여 10만원으로 가정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조례안 제4조)	29,900	-	-	-	-	29,900
	소계 (b)	29,900	-	-	-	-	29,900
□ 총 비용 (b-a)		29,900	-	-	-	-	29,900

○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 ≙ 29,900천원

-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
- = 지원단가 × 지원대상
- = 100,000원 × 299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